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이승미 의원 외 17명

나. 의안번호 : 제2105호

다. 제출일자 : 2021. 1.11.

라. 회부일자 : 2021. 1.21.

2. 제안사유

○ 본 조례안은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마을버스 내 위생, 방역과 관련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 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 는 내용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. 또한 여객이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내용을 포 함하여 안전한 마을버스 이용에 목적을 두고 있음

3. 주요내용

가. 시장은 사업자에게 마을버스 차량 내의 위생, 방역 등의 안전을

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(안 제10조제7항)

나. 시민은 쾌적하고 친절한 마을버스를 이용할 권리 및 정해진 안 전수칙 준수하며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(안 제11조의 2)

다. 사업자가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하거나, 이미 승차한 승객을 하차하 도록 할 수 있음(안 제17조제5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조례」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: 2021. 1. 26. ~ 2021. 2. 2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다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1)

¹⁾ 버스정책과-3250호(2021.1.31.)

- 제출의견 : 원안 가결
 - 관계법령인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방역지침의 준 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개정(2020.8.12.)되어 근거 법률 이 있음
 -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발병 및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경우의 대응 등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됨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, 개요

○ 동 개정조례안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장이 사업자에게 마을버스 차량 내 위생, 방역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고, 버스승객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사업자가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송을 거부하거나 승객을 하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■ 시장의 책무 관련(안 제10조제7항)

-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사업자에게 마을버스 차량에 대해 위생, 방역 등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임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7조²)및 제49 조³)에서 "시장은 우송수단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등 방

²⁾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(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)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^{5.}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

³⁾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

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독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"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

현행 조례에 시장이 마을버스 위생 및 방역조치에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마을버스 이용객의 안전 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■ 시민의 권리와 의무 관련(안제11조의2)

- 동 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와 함께 안전수칙 준수 및 전염병 관련 시책 협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
-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시행규칙 별표4⁴⁾에서 운송사업자는

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<u>다음 각 호</u> <u>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</u>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²의3. <u>버스</u>·열차·선박·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**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 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** <법률 제17475호, 2020. 8. 12, 일부개정, 시행>

^{13. &}lt;u>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</u>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

⁴⁾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4]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

^{1.} 가 3) **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**하여야 하며,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 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^{2.} 마.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<u>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</u>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.

¹⁾ 다른 여객에게 위해(危害)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,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

²⁾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(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)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

차량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고, 운수종사자는 안전운 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해 여객의 특정행위 제지 또는 필 요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5) 등의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대책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협조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마을버스 안전 향상과 이용시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- 다만, 동 개정조례안 제11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'정 해진 안전수칙'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에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

■ 안전운행 방안 관련(안 제17조제5항)

○ 동 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사업자가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 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및 폭행·협박으로 직무 집행이 방해되는 경우 등에 대해 운송거부 및 이미 승차한 여 객을 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

³⁾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4)~5) 생략

⁵⁾ 마스크, 코로나 차단 효과 어느 정도?... 직접 실험해보니 : 한국경제('20.10.23.)

⁻ 바이러스 흡입량 80~90% 줄일 수 있는 연구결과 보도

-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으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'20년 8월 12일에 개정⁶⁾됨에 따라 서울시장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준수조치를 이미 시행하는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교통수단 방역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된 상태임
-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지침 강화 현실을 반영하여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제9조7) 및 시행규 칙 제30조8)에 따라 「마을버스 운송사업 약관」을 변경9)하 여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마련한 바 있음10)

- ① <u>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</u>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<u>시·도지사에게 신고</u>하여야 한다.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④ 제1항의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8)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(운송약관의 기재사항)
 - 법 제9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 - 8.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9)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수리통지 : 버스정책과-15198호('20.5.22.)
- 10) 마을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1조(운송의 거절)

⁶⁾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

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<u>다음 각 호</u> <u>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</u>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²의3. 버스·**열차**·선박·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**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** <법률 제17475호, 2020. 8. 12, 일부개 정, 시행>

⁷⁾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(운송약관)

- 또한 '20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심판위원회¹¹⁾에서는 유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택시에 대해 "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하며 택시기사 권익도 보호해야"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마을버스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 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운송거부와 여객하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 는 마을버스의 특성과 선량한 이용 승객의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

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.

^{5.} 비상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조치를 사전 고지하였으나, 이 에 응하지 아니한 자 <신설>

¹¹⁾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: '20.10.13.

⁻ 국민권익위, "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" 행정심판 결정

⁻ 중앙행심위, 승객뿐만 아니라 택시기사 권익도 보호해야...